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례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종류 지정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08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례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종류 지정	2
※ 참고자료	7
1. 정비대상 법률 목록	7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 3).

Ⅲ. 검토의견

1. 조례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 지정

개정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6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생략)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5. 환경부장관----- ----- --
<u><신설></u>	<u>6. 그 밖에 녹색제품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을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²⁾.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요]

- (목적)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제품 구매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 (사업형태) 국고보조사업
- (주요사업)
 - 친환경소비자양성: 녹색소비생활교육,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녹색제품 생산지원: 환경표지 인증지원, 인증제품 지역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등
- 녹색제품 유통활성화: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유도, 녹색매장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지정현황)³⁾

센터명	경기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	충북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개소일자	'13.05.27	'13.06.27	'14.07.08	'17.08.27	'15.08.13	'17.11.27
위탁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 언니야	제주환경운 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대전 주부 모니터링봉 사단	세종지속가 능발전협의 회
인원	4명 (상근 1, 비상근 3)	3명 (상근 2, 비상근 1)	4명 (상근 2, 비상근 2)	2명 (상근 1, 비상근 1)	3명 (상근 1, 비상근 2)	2명 (상근 2)
센터명	광주센터	인천센터	경남센터	전남센터	전북센터	
개소일자	'18.07.26	'18.08.27	'21.06.30	'24.09.01	'25.08.예정	
위탁기관	광주소비자 공익네트워 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경남 환경재단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전북여성소 비자연합	
인원	3명 (상근 3)	3명 (상근 2, 비상근 1)	3명 (상근 1, 비상근 2)	4명 (상근 4)	3명 (상근 1, 비상근 2)	

※ 자료: 환경부

한편, 현행법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로 환경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센터의 법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국고보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가 별도 운영중 ('25.3.31.개소)이며, '24년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종료 및 '25년 하반기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예정임.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

-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등
- (지자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정산 및 운영관리 감독
- (녹색구매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성과목표 달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센터 평가지표 수립 및 사업실적 평가 등

※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예산 지원하⁴⁾에 자율적으로 수행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경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인천	서울	전남	경남	전북
'24	계	1,158	88	144	160	88	88	48	126	184	144	88	-	-
	국비	400	44	44	24	44	44	24	44	44	44	44	-	-
	지방비	758	44	100	136	44	44	24	82	140	100	44	-	-
'25	계	1,178	81	137	200	72	74	72	126	172	-	100	72	72
	국비	400	37	37	36	36	37	36	37	36	-	36	36	36
	지방비	778	44	100	164	36	37	36	89	136	-	64	36	36

※ 자료: 환경부

4)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에는 국비 외에 지방비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도 실시되고 있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여 현황]

구 분	부산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전남센터
재산 종류	사무실 및 전시공간			
재산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세종시 조치원읍	전라남도 강진군
재산 규모	217㎡	276㎡	166㎡	1,261㎡
재산 용도	사무실, 전시실, 교육실			
관리 부서	부산 시설관리공단	대전 시설관리공단	세종 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 서부청사
제공 기간	'25.01.01.~ '25.12.31.	'15.06.01.~ 사업종료일까지	'17.09.15.~ 사업종료일까지	사업 계약기간 내

※ 자료: 환경부

참고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운영의 자율성을 넓히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확대하는 ‘2024년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사업 대상 법률’ 중 하나이며⁵⁾, 유사한 취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541

5)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 3. 18.

6) <참고자료. 정비대상 법률 목록>

※ 참고자료 :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법령	내용	소관 부처
22개 법률 개정안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 안전부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 안전부
3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 체육 관광부
4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 축산 식품부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 축산 식품부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 복지부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5	영산강·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6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2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등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22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 자료: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 3. 18.